

평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주정치

- ‘이주-평화 연계’에 기반한 이주정치의 모색

한준성*

국문요약

이 글은 ‘이주-평화 연계’의 시각에서 대안적 이주정치를 모색하기 위한 ‘이주평화학’의 가능성을 탐문한다. 다만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이주연구와 평화연구, 이주 현상과 평화 실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부각되는 몇 가지 핵심 테마들을 짚어 봄으로써 이주평화학 연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먼저 ‘국경-경계 정치’와 관련하여 국경의 역동과 불법성의 문제를 살펴본 뒤, 분석 단위를 로컬로 옮겨 이주-다양성 시대의 로컬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이주인권운동과 사법기관을 평화 운동과 평화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둘 간의 연계가 갖는 중요성을 짚은 뒤, 마지막으로 분쟁 상황에서의 강제 이주-평화 연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이주-평화 연계에 기반한 진단과 분석은 대안적 이주정치를 위한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고, 평화연구자들이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더욱더 평화의 문제로 주제화하여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이주-평화 연계, 이주평화학, 이주정치, 국경-경계 정치, 갈등과 분쟁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 babaro79@gmail.com

I. 들어가는 말: ‘이주평화학’이란?

이 글은 ‘이주평화학(migration and peace studies)’이라는 연구 분야의 가능성에 대한 탐문이다. 여기서 이주평화학은 이주 현상을 추동하거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화부재 내지는 평화파괴의 요인과 맥락을 분석적으로 해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비평화의 상황 속에서 평화의 요소들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탐문하는 실천 지향의 학문 활동을 일컫는다. 이처럼 이주평화학은 이주 현상을 평화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주-평화 연계(migration-peace nexus)에 주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주-평화 연계를 통해서 이주학 연구자들은 참신한 분석의 도구들을 추가할 수 있고 평화학 연구자들은 이주 현상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발굴할 수 있다. 특히 이주와 평화를 연계하여 사고함으로써 이주의 여러 단계에 걸쳐 발현되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폭력 현상들을 보다 분석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갈등의 사회적 근원과 구조적 조건”(이동기 2014, 22)을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 ‘비판적 평화연구’의 관점은 이주 이슈의 정치화 내지는 안보화,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지평을 넓히는 데 유용하다. 이렇듯 평화학에서 축적된 개념, 이론, 사유를 적용해 이주 연구에 새로운 분석의 결들을 입힐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주학 담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둘째, 이주민은 초국적 이주의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든 ‘국경’과 ‘경계’의 폭력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평화학의 개념, 이론, 사유는 이들에게 이주의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트라우마의 맥락과 이유를 이해하고 나아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평화의 관점은 이주민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불평등 구조라든지 지배와 억압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담론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이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갈등, 그리고 연대와 저항은 평화학의 주제들로 다뤄져야 한다.

셋째, 이주-평화 연계에 기반한 진단과 분석은 대안적인 이주정치를 위한 사회과학적, 정책적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평화학의 개념과 담론은 이주 현상의 맥락과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주민

권운동에 새로운 담론적 자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기존의 인습적인 정책 대응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은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 이주와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국경의 정치, 불법성의 정치, 이주-다양성과 로컬 평화, 이주정치의 (비-)제도적 전장, 강제이주-평화 연계의 다섯 가지 테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이 밖에도 이주연구와 평화연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필자가 그간 이주연구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이주 현상들 가운데 평화연구와 연계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지점들을 이주평화학의 관점에서 주제화하였음을 밝혀둔다. 물론 이 다섯 가지 테마에 관한 논의는 서로 절연되어 있지 않고 상호 침투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II. 이주평화학의 테마(1): 국경의 정치학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이주민은 어떤 식으로든 국경(borders)과 경계(boundaries)를 체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이나 사회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차등 대우라든지 제도적, 문화적 차별로 인한 경계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이들이 외국인이자 이방인으로 체험하는 국경과 경계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민이 겪은 체험과 그 기억에 주목하는 것은 모국, 경유국, 수용국에 걸쳐 작동하는 ‘국경-경계 정치(politics of borders and boundaries)’에 관한 성찰과 맞닿아 있다. 또한 국경 통제와 내적 경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이주민의 체험과 국가 통치를 연계하여 사고하는 국경-경계 정치 연구는 국경과 경계를 고착된 현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함축한다(Fassin 2011, 214-215).

전술한 의미에서의 국경-경계 정치는 이주연구와 평화연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주평화학 관점에서 국경-경계 정치를 분석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주민이 이주의 과정에서 모국, 경유국, 수용국의 국경 통제와 체류 관리를 체험하는 가운데 입게 되는 여러 형태의 폭력, 정신적 상처와 신체적

손상,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이며, 구술생애사 접근은 이러한 미시 수준의 폭력 현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이주평화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주민의 삶과 경험(직접적 폭력)의 심층 구조와 맥락을 들여다봄으로써 이주 과정에서 발현되는 국가 폭력의 요소들과 비평화/갈등 구조(구조적 폭력 내지는 문화적 폭력)를 해명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 전환과 평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아우른다.

위 논의의 맥락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주의 안보화(securitization)다. 이민 유입을 자국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침투(invasion)’의 서사로 재현하는 경계의 정치는 일종의 ‘보호막’으로서 국경 통제를 가일층 강화하게 된다. 베스 시몬스(Beth Simmons)와 마이클 켄윅(Michael Kenwick)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의 ‘국경 정향(border orientation)’이 통제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¹⁾ 이때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위기의식에 의해 추동된 국경 통제는 그만큼 폭력 기제로 표출될 공산이 크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유럽행을 위해 모로코 내 스페인령 국경(6미터 높이 철조망)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권기에 시행된 ‘멕시코 잔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으로 인해 수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인신매매, 조직범죄, 마약, 강간, 살인 등 폭력이 만연한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에 머물며 기약 없는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다. 미국 정부는 심지어 다른 주권국인 과테말라 정부를 향해 중남미로부터 미국행을 원하는 난민과 이민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득,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평화 기획’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점점 더 ‘요새’처럼 되어가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과 이민자를 위험천만한 리비아로 강제 송환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목적국들의 강화된 국경 통제는 정규 이주 루트를 제한함으로써 더욱 위험하고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비정규 이주(밀입국)를 추동시

1) 이들에 의하면 ‘국경 지향’은 영토적 관할권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출입국 통제의 공적 현상에 대한 국가의 몰입도를 일컫는 개념으로 ‘관대한 정향’과 ‘통제적 정향’ 사이를 오가는 하나의 연속체를 따라 측정된다. 더하여 국경 지향은 사회적 선호와 공식 제도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자유주의 헌정질서를 채택한 사회에서 국가의 국경 정향은 대의 제도를 매개로 표출된 시민사회의 선호인 것이다(Simmons and Kenwick 2021).

켰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유럽 이민정책은 ‘통제’와 ‘통합’을 연계함으로써 사회통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가족재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장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둘러친 국가는 밀입국과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가 연루된 위험한 비정규 이주를 막고 자국민의 물질적 이해와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논리는 애초에 비자발적 이주를 초래한 요인들, 이를테면 분쟁과 내전, 재난, 글로벌 불평등, 그리고 보호막을 세운 국가의 제한적 요소가 다분한 이주정책 등의 구조적 요인들을 비껴간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이주평화학의 주제로서 국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이동하는 국경(shifting border)’ 현상이다. 국경을 장벽이나 철조망 내지는 국경 수비대 정도로만 상상한다면 오늘날 다양한 방식의 국경 실천의 일부를 조망할 뿐이다. ‘이주의 시대’는 이동하는 사람(people on the move)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동하는 국경(borders on the move)의 시대이기도 하다. 국경은 초국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뒤를 쫓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동하는 국경’ 현상에 주목한 일군의 연구자들은 국가 주권 쇠퇴론을 일축하면서 다채로운 국경 실천의 모습을 오히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의 증거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아예렛 샤하르(Ayelet Shachar)는 자신의 저작 『이동하는 국경(The Shifting Border: Legal Cartographies of Migration and Mobility)』(2020)에서 이동하는 국경 현상을 이론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논구했다. 그는 인간 이동성을 규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경 실천을 두고서 “움직이는 장벽(moving barrier)”으로 묘사했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의 관할권(jurisdiction) 개념을 고착된 ‘영토(territory)’ 차원에 가두지 않고 유동적인 ‘기능(function)’의 측면을 아우르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는 것이다. 국경 통제 활동이 국가의 통상적인 영토적 경계 내부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정반대로 그 너머로 멀리까지 전개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적 국경 바깥으로 전개되는 이동하는 국경의 사례로는 난민/이주민의 모국 내지는 경유국과의 재입국 협정, 항공사나 선박회사를 통한 운송규제,

타국 공항 연락사무관 파견 등을 꼽을 수 있다(Shachar 2020, 54-57). 영토적 국경 안으로 전개되는 이동하는 국경 실천의 경우, 국가 내부 영토를 마치 영토의 외부인 것처럼 간주하는 행정의 시선이 특징적이다. 법령에 근거해 육해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을 특별체류관리지대로 설정하여 이곳에서 불심검문과 신속퇴거를 허용한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플로리다의 아예 주 전체가 이 지대에 속한다. 주 전체가 국경지대가 되어 버린 셈이다.

이처럼 유연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동하는 국경의 실천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국가의 통치 책임성과 국제사회의 책무를 비껴가고 이동성 격차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이동하는 국경은 근거 법령을 두어 원치 않는 이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법적 제약이나 감시를 비껴갈 수 있다. 앞서 본 미국의 사례는 자유주의 헌정질서를 채택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헌법의 사각지대를 창출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먼 국가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경 실천에 관심을 두고 이를 민주적 통제 하에 두기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이동하는 국경은 강제이주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보호 책무를 비껴가려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운송규제나 연락사무관 파견 내지는 이동 중인 난민과 이주민을 인신매매나 밀입국 방지를 이유로 중간에서 가로막아 모국이나 경유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태 등은 국제난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라 하겠다. ‘난민과 평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비껴가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동하는 국경은 차단과 억제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면서도 선별적인 방식으로 이민 유입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이동성 격차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동하는 국경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감시 시스템의 정교화,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DB화는 ‘감시국가(surveillance state)’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비국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주를 관리,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민의 삶을 옥죄는 감시 기제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샤하르는 이동하는 국경을 오롯이 문제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동하는 국경 현상이 수반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날카롭게 지적

하면서도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샤하르는 앞서 언급한 자신의 저작에서 이동하는 국경에 대한 전복적 사유의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유동적인 국경 실천을 자유주의 헌정주의와 국제사회 책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논쟁적이었다. ‘전복’을 운운하기에는 오늘날 국경 실천의 통제적 요소가 너무나도 강고해 보이기 때문이다.

Ⅲ. 이주평화학의 테마(2): 법이 만든 ‘불법성’

이주평화학 관점에서, 특히 ‘국경-경계 정치’의 문제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연구 테마는 ‘불법성(illegality)’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행정권력에 의한 ‘명명(命名)’ 방식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 명명은 에일린 보리스(Eileen Boris)가 갈파했듯이 일종의 ‘수행적 권력(performative power)’의 행사이다 (Boris 2005; 한준성 2022a, 112). 즉, 특정한 개인 내지는 사회 집단에 대한 행정 권력의 호명 방식은 해당 개인이나 사회 집단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상화하는 것이다. 국가의 호명으로 각자의 고유한 개체적, 집단적 삶의 모습이 특정한 방식으로 범주화된다. 이 과정에서 호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은 행정의 시선 속에서 ‘통치하기 용이한 주체들(governable subjects)’로 변모된다.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주민이나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에 부과되는 ‘불법’의 행정 표지는 이러한 ‘명명의 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에 의한 ‘불법’의 명명은 ‘법적으로 만들어진 불법성(legal production of illegality)’이라는 역설적인 특징을 보인다. 정치인류학자 니콜라스 데 제노바(Nicholas De Genova)는 이 점을 예리하게 짚었다(De Genova 2002; De Genova and Roy 202, 353). 그는 이민정치의 맥락에서 ‘불법성’이 거주국 법체계에 의해 창출된 것임을 역설했다. 법을 위반한 이주민에 앞서 그러한 위법의 조건으로서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주와 제한적 요소가 다분한 이주 관련 법규가 이를 위반한 이주민을 ‘불법’ 체류자로 전략시킨 요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했던 출입국관리법령의 제약 속에 이주노동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불법’ 취업·고용된 우리의 과거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

로 법이 ‘불법성’을 양산한 셈이다. 문제는 이민행정에서 이주민이 ‘불법’ 체류자가 된 경위나 맥락, 즉 정당성 문제가 좀처럼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정법 위반 여부, 즉 합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 설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희석되는 것이다.

이주정치에서 ‘불법성’이 지닌 통치 기제로서의 특징에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면, 행정 권력은 ‘불법성’ 담론을 앞세우며 (잠재적) 적용 대상이 되는 이주배경인구를 인구학, 위생학, 범죄학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푸코 식으로 말하면 ‘생명관리정치(biopolitics)’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행정의 시선에서 이들의 삶/생명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존재성이 소거된 채 국력 내지는 자국민의 복리를 위해 추방, 통제, 관리, 이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로 격하됨을 의미한다. 정부가 단속·추방 행정을 이어오면서도 업계가 인력난을 강하게 호소하는 때에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묵인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더하여 ‘불법’의 행정 표지는 데 제노바가 지적한 것처럼 언제라도 적발되면 강제퇴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상시적 추방 공포(deportability)’의 심리 구조를 통해서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착취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De Genova 2002).

그렇다고 통치 기제로서의 ‘불법성’이 무자격 체류자인 이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민의 삶 또한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국가의 합법/불법 규정이 수반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국가가 이민행정에서 ‘정상적인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정을 근거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주민에게 이탈 행위에 대한 처벌 내지는 처벌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Çarlıkçı 2017, 33; 한준성 2022c, 16). 이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거주국 시행 법규를 따르게 되는 상황을 함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일반 고용허가제 노동자(E-9)에 대한 사업장 이동 규제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한준성(2022c, 22-23)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에 대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에 기반한 고용허가제는 무척 까다로운 사업장 이동의 조건성과 체류자격을 결합시[킨다.] ... 사업주 등

의를 얻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입증해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동은 사업장 ‘이탈’, 즉 ‘정상성’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해당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 이처럼 사업장 이동 규제가 체류자격 상실 위협과 결합되면서 고용주는 결과적으로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이동)를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받게 된다. ‘불법성’의 영역으로 떠밀리지 않기 위해 저항하지 못한 채 불평등한 노사관계에 순응할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개인적, 집단적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보면 결국 국가가 고용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활용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 모양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으로 생산된 강제근로’라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민정치에서 ‘불법성’은 치안(안전)과 생산성(축적)의 두 가지 국가 책무의 조절을 통해 신자유주의 통치의 기제로 작동한다. 여기서 이주평화학의 시선은 그러한 불법성 통치가 어떠한 폭력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지, 그리고 그 맥락과 특징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앞서 말했듯이 정책 영역에서 합법성 논리가 전면화되면서 정당성 문제가 가려지듯이 통치 기제로서의 ‘불법성’은 불평등 구조라든지 억압과 지배의 문제를 공식 담론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지식-권력으로서의 ‘불법성’은 법을 위반한, 즉 ‘불법’을 저지른 이주민의 ‘개인 책임성’을 부각함으로써 이주민이 경험하는 구조적 폭력과 통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한다(한준성 2022a, 113; 2022c, 21).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주평화학 시각에서 비판적 평화연구의 개념들과 이론적 자원을 적용하여 통치 기제로서의 ‘불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주민으로부터 인간적 삶의 필수 요소(생존, 안녕, 정체성, 자유)를 체계적으로 박탈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적 내지 문화적 폭력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비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게다가 ‘불법성’에 대한 비판적 물음 제기를 건설적인 평화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류자격(legal status)’과 ‘체류권(right to stay)’ 개념 구분의 중요성이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 까닭은 디디에 파생(Didier Fassin)이 갈파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이 ‘누가 합법적(legally)으로 체류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당하게(legitimately) 요구할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Fassin 2001, 4). 행정 기술적 영역인 체류자격 관리에 매몰되면 체류권의 중요성을 놓치게 된다. 이를테면 체류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거주해 오면서 유대와 애착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자영업, 문화 활동 등 어떤 식으로든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이주민을 떠올려 보자. 체류질서의 관점에서는 무자격 체류자로서 강제퇴거의 대상이지만 시선을 바꿔 이민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체류권 보장이 쟁점이 된다(한준성 2021). ‘무자격’의 이유만으로 구금 내지 추방하거나 혹은 체류 안정화 없이 상시적 추방 공포에 계속 시달리게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평화학의 시선이 주목해야 할 공공정책이 있다. 바로 ‘체류안정화 정책(regularization)’이다.²⁾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문제는 이민정치에서 담론의 양극화를 촉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바로 그렇기에 좀처럼 그 시행이 여의찮다. 그렇지만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정식 체류 안정화 조치가 공공정책 영역에서 심도 있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사실은 문제다. 이는 이민행정에 ‘이민윤리’가 결핍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성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체류권에 대한 보다 진중한 고려가 있을 때 체류안정화 조치의 설득력과 시행 가능성은 그만큼 제고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05년 스페인에서 단행된 대규모 체류안정화 조치다(한준성 2022a, 238). ‘불법성’ 소거,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수 확충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었던 스페인 사례는 ‘불법성’에 대한 시선을 달리할 때 열리는 이민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불법’의 행정 표지에 가려진 이주민의 사람이자 노동자로서의 실존을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한준성 2022a, 129).

2) 합법화, 정규화, 정상화, 사면을 포함해 다양한 명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로 ‘체류안정화 정책’을 고안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V. 이주평화학의 테마(3): 이주 - 다양성과 ‘로컬 평화’

동서 냉전 시기 국가안보와 전략연구 중심의 안보연구는 평화연구를 주변화시켰다. 평화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제3세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분쟁과 전쟁이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개입의 필요성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부상, 확산한 국제사회 평화담론은 이른바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로 응축된다. 이는 국가를 분쟁 지역 평화 건설의 핵심 분석 단위로 설정한 바탕 위에 새롭게 헌법을 제정하거나 안보나 사법 등 주요 부문의 시스템 개혁을 추구하는 등의 개입 방식을 일컫는다. 9/11 사태는 국가 취약성이 테러리즘의 배경 요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분쟁 지역의 국가 재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평화’의 지향과 실천을 더욱 부추겼다(Ginty 2015, 844).

그렇지만 자유주의 평화는 서구 중심적 편향을 반영한 담론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비판론자들은 자유주의 수사와 비자유주의적인 수단 활용의 대비를 두고서 서구 강대국들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기도 했다(Ginty and Richmond 2013, 767). 특히 근대성으로까지 소급되는 자유주의 평화관념은 ‘로컬(the local)’을 전근대적이고 특수주의에 함몰되어 계몽이 필요한 그 무엇으로 대상화하면서 평화건설 구상에서 끊임없이 주변화시켰다. 이는 그만큼 (주로 서구/북반구) 국가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평화건설이 필요한 분쟁 지역의 고유한 역동과 자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Ginty 2015, 845).

결국 안보 중심, 국가 주도, 하향식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 평화구상은 분쟁 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연이어 실패했고 이는 다시금 무력 개입이나 개발 원조 등 국제사회 개입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켰다(Ginty and Richmond 2013, 774). 이에 자유주의 평화가 드러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로컬 평화’가 갖는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로컬 맥락과 역동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평화 개입의 지속가능성, 정당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긴요하다는 인식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로컬’의 핵심은 지리적 공간이나 영토에 있지 않다. 장소(place)가

아닌 사람(people)이 핵심이다. ‘로컬 평화’는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재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한 평화 실천이다. 특히 토착민의 문화, 역사, 정체성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권리와 필요는 현지의 일상적 맥락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Ginty 2013, 769). 이제 로컬은 더 이상 부정적 대상화의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 하는 독자적 역동과 잠재력을 지닌 그 무엇으로 격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로컬 평화는 정치, 군사 엘리트 간의 타협(이를테면 휴전 합의나 평화 협정 체결)과 같은 하향식 ‘분쟁 관리(conflict management)’보다는 개인과 공동체 수준의 참여와 협력을 아우르면서 분쟁의 근원을 찾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창출하려는 ‘분쟁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과 더욱 강한 친밀성을 보인다(Ginty 2013, 771; Paffenholz 2009).

지금까지 평화연구에서 로컬을 주목하게 된 맥락을 짚어 봤다. 그렇다면 전술한 ‘로컬 평화’의 관점은 이주 연구와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가? 먼저, 오늘날 분쟁과 전쟁은 대규모 난민 위기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점에서 분쟁 전환을 통해 난민 발생 요인을 줄이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로서의 ‘로컬 평화’가 이주평화학의 핵심 주제인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것이 로컬 평화가 이주 현상과 만나는 유일한 지점인 것은 아니다. 이주에 기인한 다양성의 심화, 스티븐 버토벡(Steven Vertovec)의 표현을 빌리면 ‘초 다양성(super-diversity)’ 시대에 통합과 공생의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다(Vertovec 2010). 이는 이주배경인구가 밀집한 글로벌 도시에서 더욱 그러하다.³⁾ 로컬 평화가 이주 연구와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오늘날 전세계 이주민 약 20%가 20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IOM 2020). 여기에는 북경, 베를린, 브뤼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카고, 홍콩, 런던, LA, 마드리드, 뉴욕, 파리,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 토론토, 비엔나, 워싱턴 CD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18개 도시에서는 시 인구의 약 20%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세계 국가들 평균 이주민 비율이 3.4%(2015년 기준)임에 비춰 볼 때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몇몇 도시들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두바이(83%), 브뤼셀(62%), 토론토(46%), 뉴욕(37%), 멜버른(35%)을 꼽을 수 있다(IOM 2020). 한편 모국을 떠난 강제이주민 가운데 다수도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도심 지역 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IOM and WFP 2020, 6).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 ‘이주-다양성’은 예기치 않은 도전 과제를 낳을 수 있고 이는 ‘평화부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리카르드 사파타-바레로(Ricard Zapata-Barrero)는 이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Zapata-Barrero 2015, 6-10). 첫째, 방치된 다양성은 불평등 구조나 왜곡된 미디어 재현을 매개로 사회적 격리나 배제로 표출될 수 있고, 이는 다시금 신뢰와 소속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방치된 다양성은 자칫 이주민 거주국의 전통문화나 민족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문화 분열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적 연대와 공화적 충성의 기반을 침식한다. 셋째, 방치된 다양성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가로질러 각자의 문화적 역량을 소통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창의, 혁신, 발전의 기회를 차단한다. 이처럼 방치된 이주-다양성은 불신, 적대, 차별, 격리, 갈등을 낳고 나아가 공동체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킨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주민이 밀집한 로컬 단위에서 다양성 현실에 대한 적절한 개입, 즉 로컬 평화 구상의 필요성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이주-다양성을 로컬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다. 이는 중앙(연방)정부의 통제적인 이민행정에 반하여 거주지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이주민, 특히 비호 신청자와 미등록 이주민을 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피난처 도시들은 중앙(연방)정부의 제한적인 이민행정에 정면으로 맞서 관할권 내 이주배경 거주민에게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신분증을 발급해주거나 도시 성원권 관념에 기반한 새로운 공간적 접근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Shachar 2020, 95; Bauder 2021, 209-212).

일례로 트럼프 집권기 시카고 정부는 제한 요소가 다분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데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관련 지방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시장 람 이매뉴얼(Rahm Emanuel)은 외려 피난처 도시의 지향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시카고는 결단코 환대 도시(welcoming city)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Kenning and Ax 2017). 이에 더하여 시 당국은 중대 범죄 이력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추방 조치가 이들의 범죄 신고를 위축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환대 도시의 현

실적 필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화소통도시(Intercultural Cities, ICC)’는 이주-다양성과 관련한 로컬 평화의 또 다른 실천 사례로 재해석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ICC 패러다임은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선을 이주배경인구가 밀집한 도시들로 돌리고 그 안에서 이주-다양성 분석 단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긴다(Zapata-Barrero 2015, 5). 이는 도시를 종족, 문화, 민족, 언어, 국적 등을 가로질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 간이 아닌) 사람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재창출하려는 기획이다. 이때 상호 접촉과 소통은 방치된 다양성의 늪에서 불거지는 불신, 적대, 갈등,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벽이 된다. 로컬 평화 구상으로서의 문화소통도시가 갖는 지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다수의 문화(민족) 정체성 유지와 소수의 권리 존중이 서로 큰 모순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둘째, 경계를 가로지르는 접촉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셋째, 이러한 문화 역량과 소통을 창의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Zapata-Barrero 2015, 10-11).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이주-다양성 시대의 로컬 평화 구상의 핵심은 국가적 삶 내지는 국가가 규정한 범주로 흡수되거나 추상화될 수 없는 다양성 현실에 기반한 사회적 공간의 창출에 있다. 이것은 이용승의 표현을 빌리면 “오랫동안 중심과 보편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지방과 지방성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주류로부터 소외된 이주민의 이방성을 긍정적으로 재발견”하는 반추의 과정이기도 하다(이용승 2016, 9-10). 하지만 동시에 평화 구상과 실천에서 로컬에 대한 낭만화된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로컬 자율성은 자칫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구상으로 흡수될 수 있고, 다른 도시의 로컬 자율성이 강력한 이민 통제로 표출되는 경우 도시 간 연대가 심대하게 침식될 수 있다. 더하여 분쟁 해결과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로컬의 자원 동원이 국제사회의 책무를 이완시키는 방편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

V. 이주평화학의 테마(4): ‘비제도적 전장’과 ‘제도적 전장’의 연계

지난 2002년 9월 28일 국내 민주사회단체들과 아시아 각국 민간단체들은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을 통해 “오늘날 아시아인들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고 이주를 부추기는 상황들(전쟁, 불평등 경제구조, 인권탄압 등)에 맞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아시아 평화 정착과 각국의 차별적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인권보장 노력을 촉구했다. 여전히 호소력 짙은 당시 선언은 이주인권운동이 소수자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운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일깨워 준다.⁴⁾

이주인권운동은 평화운동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갈래의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평화운동의 포괄적인 시야는 이주인권운동의 활동 외연을 넓힘으로써 확장된 연대와 네트워크를 가능케 한다. 이주인권운동은 인권, 노동권, 시민권, 복지, 인종차별, 젠더폭력 등 여러 이슈와 잇닿아 있기에 다양한 인적, 물질적 자원을 동원하고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Moon 2002, 190). 이런 점에서 이주인권운동은 평화운동으로서 그 의미나 가치가 새롭게 조망,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는 둘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과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주평화학 관점에서 이주노동운동을 분석할 때 ‘노동 공화주의(labor republicanism)’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알렉스 구레비치(Alex Gourevitch)가 19세기 후반 미국 노동사 연구에 적용한 분석의 관점이다(Gourevitch 2013). 그는 당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훼손하는 ‘구조적 지배(structural dominance)’를 철폐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협동과 연대에 힘을 쏟았음에 주목하고 이들을 ‘노동 공화주의자들’로 바라보았다. 구조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변화도 궁극적으로 작업장을 온전히 혁신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비판적 평화연구의 핵심 개념들

4) 물론 소수자 운동으로서 이주인권운동이 갖는 무게감을 가벼이 봐선 안 된다. 이주인권운동은 근대 국가의 표준화된 시선에 대항하면서 다수자적인 시선을 교정하고 차이를 드러내며 다양성을 촉진하는 소수자 운동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윤수종 2005, 17-24).

가운데 하나인 ‘구조적 폭력’ 개념과 맞닿아 있다.

한편 평화운동으로서의 이주인권운동에 대한 과대한 해석이나 낭만화된 접근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운동 내적 이질성이 동원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집단행동에는 예기치 못한 반작용(backlash)이 잇따르기도 한다. 특히 에릭 느뵈(Erik Neveu)의 표현을 빌리면 이주인권운동이 촉발하는 ‘비제도적 전장’이 미디어, 법원, 선거, 국회, 지방의회와 같은 ‘제도적 전장’과 잘 연계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개선이나 개혁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느뵈 2015, 32-33). 이것은 사회운동론에서 ‘정치적 기회 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OS)’가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Kriesi 2008, 399-400) 여기서 POS는 사회운동이 대척점에 있는 상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으로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수준과 같은 제도적 구조와 집권 정치세력의 이념 지향, 그리고 미디어 시스템의 특성 등을 아우른다. 물론 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어서 거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POS가 사회운동을 정치과정과 접목시켜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의 도구임은 틀림없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그간 이민정치 연구에서 이주인권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받아 온 국가제도는 사법기관이다. 권력의 기능 분립은 POS의 핵심이기도 한 정치체계의 개방성(내지는 폐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POS에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주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POS에 해당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평화의 도구’로서 이주민 권리 내지는 이주-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특히 ‘표현의 자유’와 ‘타문화 존중’이 부딪히는 사건들)의 관리, 해결,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에 사법정치와 헌정정치는 이주평화학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연구 지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버지니 귀라우돈(Virginie Guiraudon)의 설명은 법원이나 헌재가 이주민 권리와 관련하여 평화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 준다. 요지는 개혁의 성패가 개혁이 시도되는 ‘장소(where)’에 기인한다는 것이다(Guiraudon 2000, 287). 그는 ‘논의의 장(loci of debate)’에 주목하면서 법정을 여타 국가기구(의회 등)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정쟁이라든지 사회

적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절연된 장소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법정에서의 ‘폐쇄적인’ 스타일의 논의가 오히려 법전통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주민 권리 신장에 기여하게 된다고 역설한다(Guiraudon 1998, 288-303; 2000, 84).

예컨대 독일은 기본법의 인권 조항들에 근거한 법원 판결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추방 조치를 통제하고 이주민의 체류권과 가족재결합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를 가능케 했다. 프랑스의 경우 국사원(Conseil d'État)과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대혁명에 기원한 공화주의 가치에 입각한 유권 해석을 통해 이민정치의 우경화를 억제하고 이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한준성 2017, 277). 시선을 한국사회로 돌리면, 법정은 이주민권단체들이 담론 투쟁을 벌이고 이주민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한 ‘논의의 장’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법정치(내지는 헌정정치)가 민주적 교정 기능을 얼마만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 규제에 관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연이어 기각된 사실은 의구심을 더해준다(한준성 2022c).

결국 이런 모습은 법원과 헌재가 헌법기관으로서 이주평화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전장이지만 이주민권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낭만화된 접근을 경계할 필요성을 동시에 일깨워 준다.⁵⁾ 이와 관련해서는 이주통제 기조를 내세운 행정권력이 사법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자유주의적 제약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지니 귀라우돈과 갈리아 라하브(Gallya Lahav)에 의하면 이는 세 차원을 아우른다. 즉, 정부는 이민 통제 기능을 쟁쟁 조약처럼 초국적 협의체나 기구로 상향 위임하거나, 지방정부나 지방경찰 등 로컬 단위로 하향 위임하거나, 아예 민간 부문으로 외주 형태로 위임하는 전략적 행보를 취할 수 있다(Guiraudon and Lahav 2000; 한준성 2017, 23-24).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 전략의 구사는 동시에 이주평화 실천의 또 다

5) 한 가지 사례를 들면 199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양경비대가 공해상에서 발견한 아이티 사람들을 비롯한 난민신청자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사실상 승인해주는 판결(*Sale v. Haitian Centers Council*, 509 U.S. 155)을 내렸다. 이는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의 책무가 영토적 관할권 바깥의 공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술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Shachar 2020, 65).

른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주인권운동은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위임, 내지는 우회적 주권 행사 방식에 대해 대항 전략들을 모색하고 실천한다(Guiraudon 1998, 303). 이를테면 이주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와 호소를 바탕으로 법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주평화를 위한 초국적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하여 이들은 설령 법정 투쟁의 결과 기대한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결정 내용을 문제시하면서 공론화와 담론 투쟁, 즉 이주평화의 실천을 이어간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제도적 전장과 제도적 전장의 연계에서 비롯되는 역동이다.

Ⅶ. 이주평화학의 테마(5): 장기 분쟁과 ‘강제이주 - 평화 연계’

강제이주가 이주평화학이 주목해야 할 현상임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강제이주가 평화 의제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국제난민레짐’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 ‘난민 보호’란 무엇인가? 국제난민레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난민 보호이고 이것의 핵심은 “강제이주민의 삶의 자율성과 일상성의 회복”이다(한준성 2022a, 295). 이는 국제난민레짐의 법적 토대인 1951 난민협약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난민 보호’를 ‘자선’이나 ‘시혜’로 오독하지 않아야 한다. 난민협약의 핵심은 난민이 새롭게 터 잡은 곳에서 자립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그간 난민 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유엔난민기구를 위시한 국제사회는 전후 제3세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한 인도적 접근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인도주의 접근과 원조는 ‘난민 보호’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볼 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이에 관해서는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비호 제공(asylum)’과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구분해 말할 수 있

다. 간단히 말해 재정, 기술, 인력 지원 등을 아우르는 부담 분담은 국제사회의 강행규범이 아니었고, 강행규범인 비호 제공에 대해서 북반구 국가들은 회피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다(한준성 2022b).

이에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접근에 더해 ‘비호-개발 연계(asylum-development nexus)’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기화된 난민 위기가 난민 보호의 책무를 지역사회 개발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높인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비호-개발 연계’ 또한 난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정작 현실에서는 난민 의제와 개발 의제가 분절화되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다(최원근 2022). 이에 더하여 비호-개발 연계는 내적 긴장성과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난민 의제와 개발 의제가 각기 고유한 논리나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렇기에 비호를 개발과 연계하는 가운데 ‘난민 보호’의 취지가 ‘이주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북반구 국가들의 실리 외교에 의해 희석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민 보호를 인도주의 및 개발과 연계하는 접근이 잘못되었다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반대로 두 연계 접근은 구체 실천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 본 장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더욱 포괄적인 접근 속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평화건설’과 함께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필요-권리-평화’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서 ‘강제이주-평화 연계(displacement-peace nexus)’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쟁이 강제이주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주와 평화를 연계하는 접근을 논외로 하고서 인도주의나 개발과 연계하는 접근만으로는 ‘난민 보호’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⁶⁾

특히 오늘날 분쟁은 대부분 참혹한 폭력을 낳는 장기 분쟁이다. 따라서 분

6) 메리 칼도어(Mary Kaldor)의 ‘새로운 전쟁(new wars)’ 논의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분쟁은 당사국 간의 힘겨루기라기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무장 단체들은 승패가 아니라 전시 폭력 그 자체로부터 이득을 거둔다. 또한 폭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종이나 종교 등 사회문화적 표식에 기반한 극악한 ‘정체성 정치’가 표출된다. 특히 폭력은 대부분 민간인을 향한다. 여러 무장 단체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하는데, 종족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희생될 공간이 크다. 강제 실형, 종족 학살, 문화 상징물 파괴, 조직화/무기화된 성폭력은 오늘날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Held 2002, 80-81; Kaldor 2020).

쟁은 난민 위기의 장기화를 초래한다.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장기화된 분쟁 상황과 난민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제이주-평화 연계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분쟁에 기인한 대규모 강제이주 사태에 대한 대응은 이주의 전 과정에 걸친 평화의 구상과 실천을 포괄해야 한다. 그렇지만 분쟁, 이주, 평화의 상호 연관, 다시 말해서 분쟁에 기인한 이주와 평화건설의 상호 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은 부족한 편이다. 이를테면 수용국과 경유국에서의 난민 보호는 좀처럼 분쟁 지역인 난민 모국에서의 분쟁 전환 및 평화건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쟁과 관련한 이주-평화 연계를 연구할 때 어떤 세부 주제와 논점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⁷⁾

첫째, ‘뿌리원인(root cause) 접근’이다. 뿌리원인 접근은 강제이주를 추동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평화건설의 시도로서 빈곤 완화, 인도적 지원, 분쟁 방지 등을 아우른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폭력, 인권 유린, 빈곤과 같은 모국 내 강제이주 발생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국제이주를 관리, 통제하려는 북반구 국가들의 전략적 의중이 함께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요새 유럽’의 ‘평화 기획’이라는 아이러니를 엿볼 수 있다. 더하여 뿌리원인 접근에 대해서는 문제가 놓인 보다 근본적인 맥락(이를테면 글로벌 불평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분쟁에 기인한 강제이주가 촉발하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에도 주목해야 한다. 분쟁이 촉발한 대규모 강제이주는 모국, 경유국, 수용국에 걸쳐 연쇄 분쟁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는 글로벌 난민 가운데 다수가 국가 취약성이 높은 분쟁 지역이나 저개발국에서 비슷한 조건의 또 다른 국가로 이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들의 이주가 경유국이나 수용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살펴보면, 제한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와 같은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수용국 사회 인구의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구성의 변화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오래 머문 난민과 신규 난민 사이의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제 다가 아니다. 난민의 초국적 이동은 무기, 전투원, 이데올로기의 확

7) 이하 논의는 대체로 타니아 페리네트(Tania Hörler Perrinet)와 동료들(Perrinet et al. 2018)의 설명을 필자가 재구성하여 기술한 것임을 밝혀둔다.

산을 통해 분쟁을 촉발,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우려는 ‘희생자들’을 ‘협의자들’로 바라보게 만든다. 심지어 국경에 인접한 난민캠프는 모국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 군사적 활동의 조달 지역으로 전략할 수 있다. 특히 난민캠프는 극단주의 단체가 대원을 육성, 모집하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과격화된 난민은 모국 귀환 이후에 자국의 평화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강제이주가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요인을 어떻게 관리, 해소, 전환할 것인가가 이주평화학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이다.

셋째, 비정규 이주와 밀입국/인신매매의 위험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 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기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주산업으로 성장한 밀입국 시장이 현지 국가의 안정화 기반이 되는 현상인데, 예컨대 니제르 북부 지역에서는 밀입국 관련 수익이 현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역설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사법 정의와 형사처벌의 논리를 앞세워 선불리 이주 밀입국 단속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주 과정에서 더욱 위험한 비정규 이주 루트가 상품화되고 난민과 이주민의 취약성이 배가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럽으로 가는 관문국인 리비아에서는 EU와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현지 밀입국 단속 시장의 출현으로 이어졌는데 이 시장을 선도한 것은 다름 아닌 폭력적 군사 조직들이었다. 이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로서 법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세탁한다. ‘포섭(co-option)’ 과정에서 민병대 등 현지의 불법 폭력 단체들의 활동이 정당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국가안보와 국경통제에 과도하게 기운 대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안정, 거버넌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식의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분쟁 이후 평화건설로서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다. 분쟁 이후 평화건설의 핵심이 ‘정당한 정치적 권위’의 창출에 있다고 볼 때 이행기 정의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다.⁸⁾ 이와 관련해서는 분쟁과 폭력이 대규모 강제이주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행기 정의 프로세스에 난민과 국내실향민 그리고 타국으로 이주한 자국민의 경험과 기억

8) 여기서 이행기 정의는 포괄적인 사회적 참여에 기반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에 근거한 처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포괄한다(Haider 2016, 3).

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의 참여가 과거사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과 해석 및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건설의 시도는 이주 거버넌스의 모든 수준과 이주 순환 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한마디로 평화가 주류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되찾고 개인, 사회, 국가 수준에서 갈등과 분쟁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폭력적 갈등과 분쟁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려면 인도적 지원, 장기 개발협력, 평화건설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테면 분쟁에 기인한 강제이주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도적 위기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에서부터 ‘갈등/분쟁 감수성(conflict sensitivity)’⁹⁾과 같은 평화건설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VI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주-평화 연계’의 관점에서 대안적 이주정치를 위한 ‘이주평화학’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만 시론적 성격의 글이기에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이주연구와 평화연구, 이주 현상과 평화 실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촉발되는 몇 가지 테마들을 짚어 봄으로써 이주평화학 연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먼저 ‘국경-경계 정치’와 관련하여 국경의 정치와 불법성의 문제를 살펴본 뒤 분석 단위를 로컬로 옮겨 이주-다양성 시대의 로컬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이주인권운동과 사법기관을 평화 운동과 평화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둘 간의 연계의 중요성을 짚고 난 뒤 마지막으로 장기 분쟁 상황에서의 강제이주-평화 연계에 대해 논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테마는 필자가 판단하건대 이주연구와 평화연구가 교차

9) 이 개념은 애초에 인도주의 실천(원조) 영역에서 부상하였으나 이후 국제 평화 담론과 실천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휴마 하이더(Huma Haider)에 의하면 갈등/분쟁 감수성은 먼저 당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러한 현지의 맥락과 당신의 개입의 상호 작용(현지 맥락이 개입에, 개입이 현지 맥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Haider 2014, 2).

하는 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섯 가지가 이주평화학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충분히 포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주-평화 연계성을 훑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행위 주체성에 초점을 두고 보면 분쟁 이후 귀환 이주민의 평화 실천의 모습이라든지 통제적인 이민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이민행정에서 관료와 공무원이 그러한 지침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뒤틀거나 거부하는 등의 자율적인 면모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적 맥락에서는 남북분단이라는 비평화 구조가 이주 공생의 토대인 문화 다양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화하여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가칭 ‘이주평화 아카이브’ 구축 작업의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나 난민을 비롯해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적 시선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과정과 그러한 현실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실천을 이주-평화 연계의 맥락에서 아카이빙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화하여 들여다보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애사적 체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는 국가의 얼굴과 사회의 성격을 성찰하는 과정을 아우른다. 특히 아카이브 작업은 기록물들이 개인이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소실되고 있기에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한계와 필자의 기대를 밝히며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평화학의 핵심 개념들과 다양한 사유들, 그리고 논쟁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주연구와 충분히 연계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필자 스스로 평화학에 대한 보다 너른 지식과 깊은 이해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 글이 평화학 연구자들이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더욱더 평화의 문제로 주제화하여 분석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주평화학이 학제 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나름의 고유한 연구 주제와 분석 관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준성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다. 이주문제 연구자로서 이주의 관점에서 평화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 모색』(당대, 2022).

참고문헌

- 윤수중. 2005. “우리 시대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함의.” 윤수중 외.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서울: 이학사.
- 이동기. 2014. “평화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106호, 16-36.
- 이용승. 2016.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호, 4-25.
- 최원근. 2022.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속의 난민: SDGs 속 난민소외(refugee gap) 논쟁과 총체적 접근.”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6월 30일), 서울.
- 한준성. 2017.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준성. 2020. “문화다양성과 평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2001).” 김명신 외. 『국제기준(Global Standard)과 함께 생각해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한준성. 202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관리: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1-21.
- 한준성. 2022a.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서울: 당대.
- 한준성. 2022b. “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민족연구』 79호, 4-30.
- 한준성. 2022c.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험 심사의 역설.” 『문화와 정치』 제9권 2호, 5-36.
- Bauder, Harald 저. 이영민 외 역. 2021. 『이주 · 경계 · 자유』. 서울: 푸른길.
- Boris, Eileen. 2005. “On the Importance of Naming: Gender, Race, and the Writing of Policy History.” *Journal of Policy History* 17(1): 72-92.
- De Genova, Nicholas. 2002. “Migrant ‘Illegality’ and Deportability in Everyday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419-447.
- De Genova, Nicholas and Anaya Roy. 2020. “Practices of Illegalisation.” *Antipode* 52(2): 352-364.

- Fassin, Didier. 2001. "The Biopolitics of Otherness: Undocumented Foreigners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French Public Debate." *Anthropology Today* 17(1): 3-7.
- Fassin, Didier. 2011. "Policing Borders, Producing Boundaries: The Governmentality of Immigration in Dark Tim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0: 213-226.
- Ginty, Roger Mac. 2015. "Where is the Local? Critical Localism and Peacebuilding." *Third World Quarterly* 36(5): 840-856.
- Ginty, Roger Mac and Oliver Richmond. 2013. "The Local Turn in Peace Building: A Critical Agenda for Peace." *Third World Quarterly* 34(5): 763-783.
- Guiraudon, Virginie. 1998. "Citizenship Rights for Non-Citizen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Christian Joppke ed. *Challenge to the Nation-State: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uiraudon, Virginie. 2000. "The Marshallian Triptych Reordered: The Role of Courts and Bureaucracies in Furthering Migrants' Social Rights." Michael Bommes and Andrew Geddes eds. *Immigration and Welfare: Challenging the Borders of the Welfare 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uiraudon, Virginie and Gallya Lahav. 2000. "A Reappraisal of the State Sovereignty Debate: The Case of Migration Contro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2): 163-195.
- Gourevitch, Alex. 2013. "Labor Republican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k." *Political Theory* 41(4): 591-617.
- Haider, Huma. 2014. *Conflict Sensitivity: Topic Guide*. Birmingham, UK: GSDRC, University of Birmingham.
- Haider, Huma. 2016. *Transitional Justice: Topic Guide*. Birmingham, UK: GSDRC, University of Birmingham.
- Han, Junsung. 2021. "[Book Review] Ayelet Shachar(2020) *The Shifting Border: Legal Cartographies of Migration and Mobility*." *OMNES* 11(2): 143-150.
- Hanspeter Kriesi. 2008. "Social Movements." Daniele Caramani ed. *Comparative*

-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ld, David. 2002. "Violence, Law, and Justice in a Global Age." *Constellations* 9(1): 74-88.
- IOM. 2020. "Migration Data Relevant for the COVID-19 Pandemic." <https://migrationdataportal.org/themes/migration-data-relevant-covid-19-pandemic>(최종검색일: 2022/6/30).
- IOM and WFP. 2020. "Populations at Risk: Implications of COVID-19 for Hunger, Migration and Displacement." <https://www.wfp.org/publications/populations-risk-implications-covid-19-hunger-migration-displacement-2020>(최종검색일: 2022/6/25).
- Kaldor, Mary. 2020. "Human Security: Practical Possibilities." *LSE Public Policy Review* 1(2): 1-8.
- Kenning, Chris and Joseph Ax. 2017. "Chicago to Sue Trump Administration over Sanctuary City Funding Threat."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immigration-sanctuary-idUSKBN1AM0Q5>(최종검색일: 2022/7/1).
- Neveu, Erik 저. 손영우 역. 2015. 『사회운동: 어디에서 오고, 무엇이며, 어디로 갈까』. 서울: 이매진.
- Paffenholz, Thania. 2009. "Understanding Peacebuilding Theory: Management, Resolution and Transformation." *A Journal of Peace Resrach an Action* 14: 3-6.
- Perrinet, Tania Hörler, Andrea Grossenbacher, and Laurent Goetschel. 2018. *Desk Study: Peace-Migration Nexus*. Bern, Switzerland: Swisspeace.
- Shachar, Ayelet. 2020. *The Shifting Border: Legal Cartographies of Migration and Mobil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immons, Beth and Michael Kenwick. 2021. "Border Orientation in a Globalizing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online publication). 1-19.
- Sweet, Alec Stone. 2008. "Constitutions and Judicial Power." Daniele Caramani ed. *Comparative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ertovec, Steven. 2010. "Super-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Steven Vertovec ed. *Anthropology of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London: Routledge.

Zapata-Barrero, Ricard. 2015. "Interculturalism: Main Hypothesis, Theories and Strands." Ricard Zapata-Barrero ed. *Interculturalism in Cities: Concept, Policy and Implement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Abstract

Understanding Politics of Migration through Migration-Peace Nexus

Han, Junsung*

This research intends to open a fresh horizon of migration and peace studies in quest for establishing an alternative politics of migration. Beyond the theoretical address, it is dedicated to unfolding five compellingly distinctive categories in the nexus of migration and peace. The first two concern the politics of border and boundary. After dwelling upon the dynamics of border and illeg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spect of local peace in the age of migration. Next, given the weight of judicial reviews in migration issues, it invokes a need for a far stronger engagement of civil society with it. Lastly, the situation of displacement, it argues, must be immune from barbarian violence in any hideous forms and manners. Based upon these reflections, the key objective in conflating migration and peace is eventually to attract due and inspiring attention from peace researchers, and in so doing enunciate a wider possibility of the field of migration and peace studies.

Key Words: Migration-Peace Nexus, Migration and Peace Studies, Politics of Migration, Politics of Border and Boundary, Conflict

논문투고일: 2022. 7. 22.

논문심사일: 2022. 07. 29.

게재확정일: 2022. 8. 10.

*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Public Governance, Kyung Hee University,
babaro79@gmail.com